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-

#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100
--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17일  
교 통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16일, 이은주 의원 외 11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교통위원회(2019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은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는 권고에 따름
-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지역별, 자치단체

별 차이가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·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의 마련하여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. (안 제8조의2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9. 10. 25 ~ 2019. 11. 1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) : 원안가결
- 우리시는 공개모집으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음
  - 평가기준 : 사업계획서, 번호판 발급수수료, 이용자 편의성,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
  -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조)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과 공개 모집으로 정한 발급수수료를 지정·고시하겠음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(이하 "등록번호판") 발급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정·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출 등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 개요

-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"법")제20조제1항에서 "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"대행자")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
- 서울시는 법 및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1)에 따라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'18년 3개 권역별2)로 대행자를 선정3)하여 '19년 10월부터 신규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

#### <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원 및 선정업체 현황>

- 1) 제3조(대행자의 지정기간)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 
제4조(대행자의 지정방법)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- 이하 생략 -
- 2) 강남권(광진·동작·서초·강남·송파·강동), 강서권(은평·서대문·마포·양천·강서·구로·금천·영등포·관악), 갈북권(종로·중구·용산·성동·동대문·중랑·성북·강북·도봉·노원)
- 3)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모집 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2329호, 18.10.25, 서울특별시장)

사업구역	연번	지원 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비 고
강남	1	이창기업(주)	김0원	송파구 중대로 239(오금동)	선 정
강서	1	(주)오00릭서비스	박00	강서구 00	
	2	오토플러스(주)	김0명	강서구 양천로53길 30 1201호(가양동)	선 정
강북	1	(주)동00앤드에스	이00	동대문구 00	
	2	한국비주얼(주)	전0수	중랑구 망우로 259(상봉동)	선 정

- 현재 대행자들이 부과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각 권역별로 최종 선정된 업체들이 모집 공고 당시 제시한 발급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되고 있음
- 참고로 현행 서울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대형 8,200원, 보통 6,800원, 이륜차 2,800원으로 6개 특별·광역시 중에 가장 수수료가 비싼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대형 63%, 보통 62%, 이륜차 70% 수준이며, 이 외에 전기자동차 및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발급 수수료<sup>4)</sup>도 별도 산정되어 있음

**<특별·광역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및 발급수수료 현황>**

구 분	서울	부산	인천	광주	대구	대전	울산	
'18차량등록 대수	3,124,651	1,371,172	1,577,607	664,316	1,178,353	669,959	558,106	
'18년발급량(조)	423,171	119,846	218,663	43,514	118,756	82,300	41,404	
대행업체 수	3	2	2	3	2	2	3	
대행기간(년)	5	5	5	5	5	5	5	
발급 수수료	대형	8,200	8,800	11,000	7,700	8,200	10,600	13,000
	보통	6,800	7,600	8,800	7,100	6,700	9,600	11,000
	이륜차	2,800	2,900	3,300	2,400	2,400	3,500	4,000

**■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고시 관련(안 제8조의2)**

4) '서울시 전기자동차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발급수수료'-전기자동차(21,500), 단기(2,100원) 장기(8,100원)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, 대행자는 동 기준에 따라 등록번호판 종류별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시장이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가격은 당초 고시가격이었으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'99년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·공급자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,  
  
현행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<sup>5)</sup>에서는 “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발급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할 경우 대행자는 명확한 산출내역을 발급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
- 이에 따라 지난 '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“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번호판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'19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<sup>6)</sup>”
- 따라서,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재 각 권역별 대행자들이 제출하는 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에 기

5) 제12조(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)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

6)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, 의안번호 2018-198(2018.5.18.)

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

- 다만,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'19년 4월까지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및 수수료 재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인 바,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임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#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)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8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)</u>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